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5.01.01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</p> <p>①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. [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(<a href="http://nhuf.molit.go.kr">http://nhuf.molit.go.kr</a>)에서 확인가능합니다.]</p> <p>1. 구입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.69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.2%p 가산하며,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3.0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 <p>2. 전(월)세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.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.1%p 가산하며,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.0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 <p>※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(대환 포함)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합니다</p>	<p>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</p> <p>①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. [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(<a href="http://nhuf.molit.go.kr">http://nhuf.molit.go.kr</a>)에서 확인가능합니다.]</p> <p>1. 구입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<b>4.88억원</b>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.2%p 가산하며,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3.0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 <p>2. 전(월)세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<b>3.37억원</b>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.1%p 가산하며,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.0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 <p>※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(대환 포함)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합니다</p>	<p>자산기준 금액변경</p>

